##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78 발의연월일: 2025. 4. 30.

발 의 자: 송옥주・이수진・박 정

윤준병 • 전종덕 • 한정애

김남희 · 임미애 · 이원택

김태년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송아지 공급과잉으로 소고기 가격이 하락하여 축산 농가 경영이 악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송아지 공급과잉에 능동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비하여 농가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축산업의 가격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축산물 판매가격이 생산 비를 하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축산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한편 정부의 축산물 수급조절 정책에 따라 축산 농가가 가축을 도축·출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책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이를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송아지 가공·유통 및 송아지생산단지 지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송아지 공급과잉 해소를 도모하고, 가축 판매가격이 생산비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의 축산물 수급정책에 따라 가축을 도축·출하하는 축산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여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2조의5부터 제32조의7까지 신설 등).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지급하는"을 "지급하거나 송아지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송아지를 수매하여 가공・유통하도록 할 수 있다.
-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토종유전 자원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특정 지역의 송아지 생산농가를 대상 으로 송아지생산단지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⑨ 제8항에 따른 송아지생산단지의 지정 요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5부터 제32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5(축산물 자급률 확보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보, 토종유전자원의 보호 및 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축산물의 자 급률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저생산비 보장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2조의6(가축경영안정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3년 평균 가축의 판매가격이 3년 평균 생산비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가축경영안정자금"이라 한다)을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가축경영안정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가축경영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범위와 가축경영안정자금 지급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의7(도축·출하장려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 사육농가가 수급정책에 따라 사육하는 가축을 도축 및 출하하는 경 우 해당 사육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 대상 가축의 범위 및 장려금 지급 요 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3장에 제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3조의4(축산물의 소비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군부대 등 공공급식을 실시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축산물의 목표 소비량을 공개하게 하거나 홍보 사업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①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	
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	
지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	
이 제4조에 따른 축산발전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	
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	
생산안정자금을 <u>지급하는</u> 송아	<u>지급하거나 송아지</u>
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한다. 이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	
상이 되는 소의 범위는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
	지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송아지를 수
	매하여 가공・유통하도록 할
	<u>수 있다.</u>
<u>&lt;신 설&gt;</u>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

<신 설>

<신 설>

<신 설>

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토종유전자원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특정 지역의 송아지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생산단지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송아지생산단
 지의 지정 요건・절차 등에 관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32조의5(축산물 자급률 확보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 량안보, 토종유전자원의 보호 및 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 여 축산물의 자급률 목표를 정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저 생산비 보장을 위한 방안을 강 구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정자금"이라 한다)을 사육농가 에 지급하는 가축경영안정사업 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경영안정 사업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범 위와 가축경영안정자금 지급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7(도축・출하장려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가축 사육농가가 수급정책 에 따라 사육하는 가축을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 해당 사육농 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 대상 가축의 범위 및 장려금 지급 요건・절차 등에 관한 사 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한다.

제33조의4(축산물의 소비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축산
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군부대
등 공공급식을 실시하는 기관
・단체로 하여금 축산물의 목
표 소비량을 공개하게 하거나

 홍보 사업 등의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